

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시장·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법·절차의
범위(제25조제1항 관련)

1. 주택의 공급 기준: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(이하 "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법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19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이행한 자(이하 "현물출자자"라 한다)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.
2. 주택의 공급신청
 - 가. 현물출자자는 복합개발사업구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가 통지하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.
 - 나. 가목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현물출자자는 분양신청서에 현물출자 내용을 적고,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3. 주택의 공급
 - 가.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는 제2호가목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정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, 현물출자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.
 - 나.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·신청절차·공급조건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주택법」 제5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업주체"는 "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"로 본다.
 - 다.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는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시장·군수등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현물출자자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라. 시장·군수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.
4. 그 밖의 사항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현물출자자의 출자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의 방법, 분양신청 절차, 공급가격 및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 또는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8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